

사회복지법인 티뷰크사회복지재단 2023년 임시 이사회 회의록

□ 일 시 : 2023년 6월 23일(금)요일 10:00~10:30.

□ 장 소 : 티뷰크빌딩 6층 대회의실

□ 총이사수: 이사 10명, 감사 2명

□ 참 석 : 이사참석(7명)

○ 이사참석 : 이선옥, 안동규, 박정식, 유상훈, 이경우, 진재성, 황성식

○ 불 참 : 김순식, 천민경, 표영태, 양성열(감사), 서창길(감사)

□ 통보안건

가. 제 1호 의안 : 서울시 정관변경(목적사업의 추가)인가 보완 요청에 따른 내용 추가의 건

나. 제 2호 의안 : 티뷰크사회복지재단 정관변경(목적사업 추가) 재 신청의 건

□ 성원보고 및 개회

의장 이선옥은 참석임원을 확인하고 정관 제 26조에 의거 적법하게 성원되었음을 보고한다. 의장 이선옥은 사회복지법인 티뷰크사회복지재단 임시 이사회 개회를 선언하며 참석이사에게 감사인사를 전한다.

그 후 전차회의록을 통한 정기이사회회의 의결사항을 확인한다.

□ 의결사항

가.제 1호 의안 : 서울시 정관변경(목적사업의 추가)인가 보완 요청에 따른 내용 추가의 건

의 장 : 외부의 일정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총 2가지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논의하고 승인할 것입니다. 우선 첫 번째로 서울시 정관변경(목적사업의 추가)인가 보완요청에 따른 내용 추가의 건입니다. 자료집 6페이지를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.

2022년도 4/4분기(12/15)정기이사회 당시 본 법인은 4호 의안으로 정관변경(목적사업 추가)이사회 의결을 진행하였습니다. 의결 진행 후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에 의결 내용에 따라 목적사업을 추가 하고자 하였으나, 자료집 6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가지의 보완사항을 요청하며, 진행되지 않았습니다. 상기 문제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통한 법인의 상황을 이사님들께 설명드리고 재 신청하고자 합니다.

서울시의 보완사항은 총 3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 추상적인 법인 목적사업의 변경, 목적사업 추가 사업에 대한 이사회 논의, 적절한 이사회 개최방법 소명입니다.

4/4분기 정기이사회 당시 신청하고자 했던 목적사업 내용은 하기 신규대조표와 같이 [다함께돌봄센터 수탁 운영]이었습니다.

< 1차 신규대조표 >

현행	개정안
<p>제4조(사업의 종류)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물품 지원 사업 2. 저소득 노인 결연사업 3. 노인대상 밀반찬 및 음료 배달 사업 4.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 5. 저소득 가정 및 세대 지원 사업 6. 그 밖에 이 법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7. 종합사회복지관 수탁 운영 	<p>제4조(사업의 종류)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물품 지원 사업 2. 저소득 노인 결연사업 3. 노인대상 밀반찬 및 음료 배달 사업 4.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 5. 저소득 가정 및 세대 지원 사업 6. 그 밖에 이 법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7. 종합사회복지관 수탁 운영 8. (추가) 다함께돌봄센터 수탁 운영

2호 안건에서 다루겠지만 추가할 목적사업의 내용을 서울시 적정예시와 같이 ‘제44조의2(다함께돌봄센터)의 따라 아동키움센터 위수탁 운영’으로 정정할 것입니다.

두 번째는 목적사업 추가 시 추가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, 인력배치 및 재정확보 등을 통한 실행가능성을 이사회에서 논의하였는가 입니다. 본 목적사업은 위수탁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. 본 법인은 지원법인이지만 2016년 종합사회복지관 수탁운영의 목적 사업을 추가하고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3곳을 위탁운영중에 있습니다. 그와 동일한 방안으로 위탁운영중인 산하시설에서 키움센터를 위수탁 운영하기 위함으로 키움센터 위수탁 신청서로 충분한 내용증명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.

세 번째는 이사회 안건 등이 기재된 이사회 개최공문을 이사들에게 적정하게 공지되었는지에 대한 이사회 소집절차 등의 자료제출입니다. 저희 법인은 이사회 진행에 앞서 1주일 전 우편으로 이사회 자료집을 공문과 함께 발송하고 있습니다. 적법한 이사회 진행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, 이에 각 이사님들께서도 확인하고 있으신 상황입니다.

안건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 있으십니까?

안동규 이사 : 상기 추상적인 목적사업 문구에 대해 삭제를 해야한다는 의견인 듯 합니다. 법인에서는 추후 어떻게 변경할 예정입니까?

의 장 : 앞서 설명 드렸듯이 법인의 목적사업은 2007년 법인설립당시에 설정되었던 내용들입니다. 추후에 본 법인에서는 이사회를 통하여 추상적인 형태의 목적사업을

구체적으로 규정 또는 삭제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

안건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 있으십니까?

이사 일동 : 동의합니다. 재청합니다.

의 장 : 이사님 전원의 찬성 및 재청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.

나. 제 2호 의안 : 티뷰크사회복지재단 정관변경(목적사업 추가) 재 신청의 건

의 장 : 다음은 2호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티뷰크사회복지재단 정관변경(목적사업 추가) 재 신청의 건입니다.

자료집 7페이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.

앞서 1호 안건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관변경건이 반려되었으므로 재승인을 위해 이사회 의결을 다시 받고자 합니다. 목적사업의 추가는 구체적인 목적사업 규정을 위하여 “[아동복지법] 제 44조의 2(다함께돌봄센터)의 따라 아동키움센터 위수탁 운영”으로 구로구에 위탁운영중인 키움센터 운영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.

안건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 있으십니까?

< 신구대조표 >

현행	개정안
<p>제4조(사업의 종류)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물품 지원 사업 2. 저소득 노인 결연사업 3. 노인대상 밀반찬 및 음료 배달 사업 4.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 5. 저소득 가정 및 세대 지원 사업 6. 그 밖에 이 법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7. 종합사회복지관 수탁 운영 	<p>제4조(사업의 종류)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물품 지원 사업 2. 저소득 노인 결연사업 3. 노인대상 밀반찬 및 음료 배달 사업 4.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 5. 저소득 가정 및 세대 지원 사업 6. 그 밖에 이 법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7. 종합사회복지관 수탁 운영 8. [아동복지법] 제44조의2(다함께돌봄센터)의 따라 아동키움센터 위수탁 운영

안건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 있으십니까?

이사 일동 : 동의합니다. 재청합니다.

의 장 : 이사님 전원의 찬성 및 재청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.

수고 많으셨습니다. 이로써 이사회 참석 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청으로 의안 2가지가

